

## 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® 04373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,8F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−(내선번호)/전송(02)796−4487 의무법제국장 김상구(6573)/ 의무팀장 이재용(6540)/ 과장 김철욱(6536)/ E−mail: leokma0817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0625-00594호

시행일자 2022. 4. 19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(정보제공) 시행 알림 및 협조 요청(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)

- 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- 2. 관련근거 :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정보분석팀-253(2022.04.14.)
- 3. 식품의약품안전처는 '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' 제11조에 따른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하였으며, 식욕억제제의 적정 사용을 위해 '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' 마련·배포 및 사전알리미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4.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에 대한 취급정보를 분석하여 사전안내(정보제공)를 시행하고, 해당 처방 사례에 대한 의학적 사유를 수집하기 위하여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(의료쇼핑방지정보망)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5.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마약류 취급내역을 분석하여 "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(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)"을 벗어나 처방한 1,708명의 의사에게 사전알리미(정보제공)를 발송하였음을 우리 협회에 안내하였습니다.
- 6. 이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사전알리미(정보제공)를 수신한 의사의 식욕 억제제 처방·사용 내역을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다시 모니터링하여 동 정보제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개선 여지가 없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항에따라,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에 해당하는 처방·투약에 대한 사전통지 및 취급금지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안내해온바, 이에 우리협회는 귀 회에 「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」(붙임1참조)을 준수하여 처방·사용하도록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를 소속회원들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참고, 의학적 필요성 등에 따라 동 안전사용기준(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)을 벗어나 처방·사용한 경우라면 이와 관련한 처방사유 및 근거자료 등을 2022년 6월 30일(목)까지 "의료쇼핑방지정보망(data.nims.or.kr)"으로 제출 가능(관련 매뉴얼 붙임2 참조)

붙임: 관련 공문 등 각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

수신처: 16개 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각 전문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개원의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